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72
------------	------

발의연월일 : 2017. 1. 12.

발의자 : 김영호 · 서영교 · 이철희

김현권 · 문미옥 · 김상희

김정우 · 표창원 · 소병훈

전혜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는 일반 승용자동차에 비해 사고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특히 일부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렉카)는 불법 · 난폭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끼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난폭운전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대해서만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을 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

조제1항제7호의2 신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호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① ----- ----- ----- ----- ----- ----- ----- ---. ----- ----- ----- ----- ----.
1. ~ 7. (생략) <u><신설></u>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u>
8. · 9. (생략) ② · ③ (생략)	8. · 9.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